식품법 B.E.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호[1)]

B.E. 2522(1979)년 식품법의 제5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중보건부장관(Minister of Public Health)은 공중보건부령(Ministerial Regulation, 이하 "보건부령"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다.

1항. 판매용의 식품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 보건부령에 첨부한 서식 Orr.1을 그 서식에 명시한 서류와 함께 신청한다.

2항. 1항에 따른 사용 허가 신청인은 이래와 같이 사용 허가 신청 서류 2부를 제출한다.

(1) 식품, 유형, 크기 (마력)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도구 및 장비 목록 및 생산된 식품이 양질의 품질과 표준의 것으로 소비하기에 안전하다는 신뢰성을 입증하는 증명서.

(2) 공장의 위치와 인근 건축물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3) 축척에 따라 정확히 작성된 공장 구역 내의 건축 설계도로서 아래의 항목을 보여주는 것.

(A) 생산에 사용하는 건물의 전면도, 측면도, 평면도 및 단면도

(B) 식품의 종류별 생산, 원재료 보관, 식품의 준비, 기계의 배치, 포장 작업, 준비된 식품 보관 장소를 위한 방 또는 구역의 구분 및 기타의 장소. 바닥과 벽은 쉽게 닦을 수 있는 물질로 건축하며, 경로 아래로 경사면이 지며, 용이한 청소를 위해 배수되어야 한다.

(C) 파이프 또는 하수도 시스템, 폐수나 유해 방출물의 처리를 위한 공정 및 상세한 계산과 함께 파이프나 배수 장치의 크기와 공장을 떠날 때까지 공장 내부로 흐르는 물의 방향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 식품 생산지 근처에 공공 배수로가 있는 경우 공공 하수도까지의 배수로도 보여주는 것.

2/1항.[2)] 제 6조(7)에서 장관이 정한 생산 절차, 생산에 사용하는 도구, 식품 보관법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자는 장관의 규정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평가는 식품의약품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3항. 식품 생산 허가서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한 서식 Orr.2를 사용한다.

---

1) 1979년 11월 22일의 관보 제96권/제193편/특별호(Special Issue) 1쪽:B.E.2522(1979).

2) 2/1조는 보건부령 제 12호에 따라 제정되었다.

4항. 식품 생산을 허가받은 자는 아래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1) 식품을 생산, 포장하는 장소 또는 원재료 등을 보관하는 장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곤충이나 기타의 물질이 원재료나 제조하는 식품에 들어가거나 얼룩이 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적절한 조명과 필요한 충분한 환기를 제공한다.

(2) 사용하는 작업에 적합한 도구와 기구의 종류를 정리하고, 보호용 도구와 기구가 물건이나 먼지와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조리용 도구와 기구는 해당 식품 유형의 생산을 위한 기술적 원칙에 따라 안전한 금속이나 재료로 만든다.

(3) 적절한 화장실 및 위생 용품에 근로자의 수에 맞추어 손 비누를 제공하고, 매일 방부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4) 도구 및 장비 (3)뿐만 아니라 공장 건물을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며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한다.

(5)고형 폐기물 및 그을음의 처리에 적합한 적절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보관소와 사용 방법을 제공한다.

(6)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물은 보건부의 품질이나 표준에 따른 깨끗한 식수로 하고 공장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물은 깨끗해야 한다.

(7) 식품을 마련하거나 생산하는 근로자에게 앞치마, 방수 신발, 장갑, 헤어 커버와 함께 수행하는 작업 유형에 적합한 깨끗한 옷을 제공한다.

(8) 식품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처나 질병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생산한 식품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다.

(9) 무능력자, 정신질환자, 질병의 보균자 또는 아래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사용 허가서에서 명시한 장소에서 일하도록 고용할 수 없다.

(a) 나병

(b) 위험기 결핵

(c) 약물 중독

(d) 알코올 중독

(e) 상피병

(f) 심한 피부병

(10) 식품을 준비하거나 생산하는 (9)에 따른 질병이 없다는 의료 전문가의 증명서를 가진 자만을 근로자로 받아들인다.

(11) 근로자에게 최소 1년에 1회 의료 전문가의 신체검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신체검사 문서를 증거로 보관한다.

(12) 식품 생산에 있어서의 청결 유지를 위해, 제조 식품의 생산, 포장 또는 보관하는 구역과 원재료를 보관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침 뱉기, 씹기 등의 불쾌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한다.

(13) 제조 식품을 생산, 포장 또는 보관하는 장소와 원재료를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동물도 들어갈 수 없다.

(14) (12) 및 (13)의 내용을 해당 장소에 명확히 보일 수 있는 곳에 표로 명시한다.

5항. 식품 생산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서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면 본 보건부령에 첨부한 서식 Orr.3을 그 서식에 명시한 서류와 함께 신청한다.

사용 허가받은 자는 원래의 사용 허가증의 갱신 목록에 식품 생산사용 허가증의 갱신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사용 허가증을 발행할 수도 있다.

제6조(7)에서 장관이 정한 생산 절차, 생산에 사용하는 도구, 식품 보관법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허가서 갱신 신청은 식품의약품청이 규정한 다른 증거를 획득하지 않는 한 제 2/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3)]

6항. 사용 허가증의 대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식품 생산을 허가받은 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한 Orr.4 서식을 그에 명시한 문서와 함께 신청한다.
사용 허가증에 대한 대체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 허가받은 자는 원래의 사용 허가증의 앞에 "대체"라는 단어를 넣어 사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7항. 생산 장소나 식품 보관 장소를 이동하려는 모든 식품 생산을 허가받은 자는 본 보건부령에 첨부한 서식 Orr.5와 그 서식에 명시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용 허가받은 자는 식품 생산 장소나 식품 보관 장소의 재배치 허가를 생산 허가서나 대체 허가서에 표시한다.

식품 생산 장소나 식품 보관 장소의 이전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2항 및 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4)]

8항. 본 보건부령에 따른 신청서는 아래의 장소에 제출한다.

(1) 방콕은 식품 의약청, 보건부 또는 식품의약품청장이 통지하는 기타의 장소에 제출한다.

(2) 다른 지방에서는 식품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방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청장이 고시하는 기타의 장소에 제출한다.

1979년 11월 17일 발령
분솜 마틴 (Boonsom Martin)
보건부장관

---

3) 5항 3번째 단락은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2호(B.E. 2548)에 의해 추가되었다.
4) 7항 3번째 단락은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2호(B.E. 2548)에 의해 추가되었다.

첨부

1. 식품 공장 설립 신청서
2. 식품 생산 허가서
3. 식품 생산 허가 갱신 신청서
4. 대체 식품 생산 허가 신청서
5. 생산 또는 식품 보관장소 이전 신청서

(더 자세한 정보는 시행규칙 참조)

주석: 이 보건부령을 공포하는 이유는 B.E. 2522년 식품법의 제14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보건부령에서 규정하는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판매용 식품 생산 공장 설립 허가의 신청 및 허가서, 대체 허가 신청서, 식품 생산 또는 보관장소 이전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건부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

"보건부령 제12호 (B.E. 2548)"는 "B.E. 2522 식품법"[5]에 따라 발령한다.

주석: 본 보건부령을 공포하는 이유는 판매용 생산 식품은 식품 생산 및 보관을 위한 생산 방법, 도구 및 기구에 대한 장관의 공고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는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인 시스템과 호환되고 일관되도록 국내 제품의 표준 수준을 높이고 무역 경쟁의 이익을 위해, 판매용 식품의 생산 허가/식품 생산사용 허가증의 갱신 및 생산 또는 식품 보관장소의 이전 허가에 대한 신청서는 식품의약청장이 명시하여 규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식품의약품청장이 고시한 다른 곳에서 신청서를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건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프롬낫(Phromnat)
2019년 2월 20일 수정

5) 관보 제122권 / 81부 A / 페이지 13 / 2005년 9월 15일